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2.10.21] [서울대학교학교시행세칙, 2022.10.2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880-50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3조(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제한)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규채용후보자 심사) ① 교원인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초 및 전공심사와 면접심사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필요에 따라 단계별 심사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심사사항별로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실시하고 각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평정한다. ③ 단계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는 경우 면접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를 통과한 후보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각 단계별 심사의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 항목, 비중, 방법 등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조(연구실적물 등 심사) ①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 및 인정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공부문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은 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심사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사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3명의 평균이 2.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미만일 때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실적물 평가는 제출된 연구실적물을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고 내용평가가 4.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4.0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총괄연구업적은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다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할 시 그 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대학(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평가한다.

제6조(면접심사) ① 공개발표, 교육 및 연구계획, 임용 적합성을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② 공개발표는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되 그 중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 평가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가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③ 교육 및 연구계획 심사는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다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할 시 그 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대학(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평가한다.

제7조(심사위원) ①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공개채용지원 추천자,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각 대학(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다.②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지명하여야 한다.1. 학과(부)장으로부터 학내인사와 학외인사를 구분하여 위촉할 심사위원보다 많은 후보자를 추천 받아 대학(원)장이 5명을 지명함.2. 심사위원은 임용후보자 예정직급 이상인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관련 학외인사 중에서 선정하되, 학외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3. 심사위원은 동일 모집분야의 응모자 전원을 심사할 수 있는 인사로 함. 4. 동일 모집분야를 심사할 교원이 본교에 없거나 모집분야와 동일 전공분야인 본교 교원의 직명이 하위직일 경우에는 학외인사를 위원으로 지명함.③ 총괄연구업적과 면접 심사위원은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명하거나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8조(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각 대학(원)인사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선발인원의 배수를 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각종 평가표 제출 및 신규채용후보자 추천) ① 대학(원)장은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대학교원 공개채용 지원서(서식1호)와 대학교원 채용 지원자 명부(서식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평가결과를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심사보고서(서식3호)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교원임용후보자조서(서식4호)와 교원임용심사보고서(서식5호) 및 공채심사종합평가표(서식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종합평가점수를 획득한 지원자에 대하여는 교원임용심사보고서(서식5호)에 추천직급과 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재임용

제10조(임용기간 종료 통지) ① 총장은 대학(원)장에게 위임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임용 대상이 되는 소속 전임 교원에게 임용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통지 시에는 심사기준, 심사일정,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전임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재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교원인사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종료 5개월 전까지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입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승인 당시의 직급에 한한다.

제11조(재임용후보자 심사) ① 재임용후보자 심사는 제2항에 따라 교수업적평가를 통하여 시행하고 재임용후보자는 교수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는 제12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동일직급에서 2회차 이후의 재임용후보자 심사에서 재임용후보자는 교수업적평가 결과 7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교육활동(40점), 연구활동(40점), 봉사활동(10점), 기관장평가(10점)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종 수상경력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5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학(원) 및 소속 교원의 학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규정 제4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가산점을 제외한 총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별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평가는 해당 대학(원)에서 정한 배점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22. 10. 21.]③ 교육활동(40점) 평가는 책임강의시간, 학위배출, 강의평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④ 연구활동(40점) 평가는 심사대상 연구실적물(20점), 총괄연구실적(15점), 그 밖의 연구활동(5점)(“그 밖의 연구활동”이란 연구과제수행 및 산학협동실적 등을 말한다.)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총괄연구실적에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기간 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 당시까지 출판한 연구논문, 저서, 학술활동(학술회의, 초청강연 등), 전시 및 발표회, 공연 실적 등이 포함되고, 학과(부)장·대학(원)장과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각각 평가한다. ⑤ 봉사활동(10점) 평가는 교내활동, 학회활동, 정부부처활동(자문위원, 심사위원, 파견근무 등), 사회봉사활동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⑥ 기관장평가(10점)는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에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 등에 대한 평가로, 대학(원)장이 실시한다.⑦ 가산점(5점)은 그 밖의 업적(수상, 서훈, 표창 등) 등에 대한 평가로 대학(원)장이 실시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인사위

원회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각 대학(원)장은 평가 및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24조에 따라 평가항목을 대체 혹은 신규로 추가한 경우, 대학(원)에서는 가산점을 제외한 총점의 범위 내에서 전체 평가항목의 배점을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야 하며, 대체 혹은 신규로 추가된 항목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8항에 따른다.[신설 2022. 10. 21.]

제12조(연구실적물 심사)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 및 인정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4에 따른다. 다만,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물의 구체적인 범위 및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일정한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구실적물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은 재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교원인사규정 제24조의2의 “계약임용기간”은 계약 시작일부터 재임용 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교원인사규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의 정규학기 시작되기 이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채용된 시기에 의해 발생하는 기간은 연구실적물 제출편수 기준이 되는 계약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대상 연구실적물과 총괄연구실적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은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2를 따르며, 심사위원은 재임용후보자 직급 이상인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인사 중에서 선정하며, 학외인사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연구실적물 평가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3에 따라 심사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각 편 평균 “우”이상의 평가 등급을 획득한 연구실적물이 교원인사규정 제24조의2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적격으로 인정한다.

제13조(소명기회 부여)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전임교원에게 교원인사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대학(원)장은 해당 전임교원에게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그 밖에 재임용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해당 전임교원에게 의견 등을 진술할 시간과 장소를 15일 전에 통지하고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 진술 등 소명을 하도록 하며,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임용예정자 결정 등) ① 총장은 대학(원)장이 추천한 재임용후보자를 적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임용후보자가 다음 평정항목에 비추어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교육·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본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교원으로 복무 중 중징계를 받거나 교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4.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총장은 대학(원)장이 재임용 부적격자로 보고한 자를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불가자로 결정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해당 전임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케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임용 불가 통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 전임교원에게 재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청구 기간 등의 고지) 총장은 재임용 불가를 통지할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와 청구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임용

제17조(승진임용후보자 심사) 승진임용후보자 심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교수업적평가를 통하여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 10. 21.]

제18조(연구실적물 심사)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 및 인정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4에 따르되,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물의 구체적인 범위 및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일정한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구실적물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연구실적물과 총괄연구업적의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은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2제1항을 따르며, 심사위원은 승진임용후보자 예정 직급 이상인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인사 중에서 선정한다. ③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3에 따라 심사하되, 제출된 모든 연구실적물의 평가 등급이 각 편 평균 “우” 이상을 획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④ 연구실적물 인정기간은 승진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타교경력인정 승진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 중 본교 재직기간 중에 발표한 논문만을 연구실적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⑤ 교원인사규정 제28조의3제1항의 “계약임용기간”은 해당 직급의 계약 시작일부터 승진임용 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교원인사규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의 정규학기 시작되기 이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채용된 시기에 의해 발생하는 기간은 연구실적물 제출편수 기준이 되는 계약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0. 21.]

제19조(승진임용예정자 결정 등) 총장은 대학(원)장이 추천한 승진임용후보자를 적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제5장 정년보장임용

제20조(정년보장임용후보자 심사) ① 정년보장임용후보자 심사는 교수업적평가를 통하여 시행하고, 평가 결과 80점 이상(부교수 정년보장임용후보자는 연구활동 점수 35점 이상 포함)을 획득하여야 하며,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수업적평가는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따르되, 이 경우 제11조제4항의 총괄연구업적은 후보자가 본교 임용 이후 출판한 연구논문, 저서, 학술활동(학술회의, 초청강연 등), 전시 및 발표회, 공연 실적 등을 의미한다.[개정 2022. 10. 21.]

③ 정년보장임용후보자의 소속 대학(원)장은 해당 후보자 전공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계 최상급 전문가 5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학문 분야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④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의 전임교원에 대한 정년보장임용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5장 정년보장임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승진임용의 해당 조항을 따른다.

제21조(연구실적물 심사 등)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 및 인정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4를 따르며, 부교수의 정년보장임용 시의 분야별 연구실적물의 구체적인 범위 및 평가기준은 대학(원)장이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심사대상 연구실적물과 총괄연구업적(대표연구실적 포함)의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은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2제1항을 따르며,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임용된 본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 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선정한다.

제22조(정년보장임용 심사 시기 등) ① 교원인사규정 제32조제4항에 따른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시기는 부교수 승진 임용 시, 부교수 신규채용 후 또는 부교수 승진임용 후 3년 경과 후 먼저 도래하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교원인사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부교수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서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1.]

② 부교수 승진(또는 신규채용) 3년 후에 정년보장을 받을 후보자 심사는 본교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신규채용의 경우 부교수 재직)한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부교수 승진 시의 정년보장임용 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교수 승진임용 시의 정년보장임용 심사는 승진임용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교수 신규채용 시 정년보장임용심사는 신규교원임용 예정자 선발절차를 거친 후에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④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정년보장임용 심사는 본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교수 승진 시의 정년보장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3조(교원 심사 및 정년보장임용예정자 결정)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는 정년보장임용후보자가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서울대학교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한 종합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총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정년보장임용을 추천한다.

② 총장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가 정년보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한 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보장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대학(원)인사위원회 등) ① 대학(원)인사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의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제반 절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교원인사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시행세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1.]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각 대학(원) 내규 및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사항 중 일부를 관련 학과(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따로 정한다.

부칙 <제2호, 2022.10.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신규채용된 교원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